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854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장우, 남동성, 가장현, 전수연, 길태기, 송평근
	변호사 김용덕, 정영식, 김동국, 강동근, 김근우(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5노25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

주 심 대법관 엄상필 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8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25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항 소 인	검사
검 사	소정수(기소), 나혜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장우, 남동성, 전수연
	변호사 정영식, 김동국, 강동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2고정43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2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7

원심은,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거래행위가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이고, 그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임직원들은 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집단 C 소속 각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공모하여 2015.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 및 각 계열회사로 하여금 동일인 및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91.86%를 보유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D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과 일반거래, 행사·연수거래, 광고 거래, 명절선물 거래를 아래와 같이 상당한 규모로 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단위: 1,000원)

연번	계열회사명	2015년	2016년
1	A	3,996,963	3,731,070
2	B	3,111,894	3,720,794
3	E	3,759,473	5,243,690
4	F	7,945	47,388
5	G	78,817	62,782
6	H	55,892	51,303
7	I	4,400	2,672
8	J	4,616	15,62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7

9	K		104,247
10	L	30,662	14,135
합계		11,050,662	12,993,702

2.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관계 법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7

나. 관련 법리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전문, 제1호, 제4호, 제4항은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의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주식지분에 따른 비율적 이익을 초과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고, 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 참조).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 입법 경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이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 등 참조).

3.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7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원심 설시 사실 내지 사정 등과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임직원에게 기업집단 C 소속 각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골프장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를 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기업집단 C은 2017. 5. 기준 D(2008. 9. 23. 설립),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M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등 총 41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집합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06. 3. 16. N(이하 'N'라 한다)를 설정하고, 2010. 11. 23. O(이하 'O'라 한다)를 설정하였다.

2) 피고인 A은 N 사업으로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 무렵 'P 호텔'을 유치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A이 O 사업으로 투자한 Q(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는 건설이 완성되어 2013. 5.경 운영을 개시하였다.

피고인 A은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1] 2013. 8.경 D에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골프장 소유 및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다. 결국 D은 2014. 12.경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O의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R과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매년 감정평가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골

1)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업무 범위에 부동산의 운영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제240조 제4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7

프장을 운영하였다.[2)]

피고인 A은 2013. 8.경 이 사건 골프장과 같이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P'(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소유는 N가, 운영은 D이 하기로 하였다. D은 매년 감정평가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 본격적으로 이 사건 호텔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3)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 A이 설정한 집합투자기구인 N는 피고인 A이 59.06%, 피고인 B이 39.42%, D이 1.52%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고, O는 피고인 A이 75%, E이 20%, L 주식회사가 4.28%, D이 0.72%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D은 N, O의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골프장, 호텔의 투자수익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부동산 관리업, 경영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D이 그 운영을 맡는 것 자체는 위 집합투자기구의 경영상 판단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인다.

4)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2015년 피고인 A은 약 39억 원, 피고인 B은 약 31억 원의 거래를 하였고, 2016년 피고인 A은 약 37억 원, 피고인 B은 약 37억 원의 거래를 하였다. E은 2016. 6. 1. 기업집단 C 소속으로 편입되었는바, 2015년 약 37억 원, 2016년 약 52억 원의 거래를 하였다(위 3개 회사 외 나머지 계열사들의 거래액은 약 1억 이하의 소규모 거래이다). 피고인들과 E은 N, O의 지분 보유자로서 이 사건 골프장 등을 이용함으로써 배당이익, 자산가치의 증가 등의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고 보인

2) 이 사건 골프장은 2017. 8. 1.경부터는 D의 자회사인 S가 운영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7

다(피고인 B은 N에 대하여만, E은 O에 대하여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업종의 특성상 임직원, 고객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골프장 등의 이용을 같이 하게 함으로써 시너지가 발생하여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3]).

5) C 계열사는 D이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기 전인 2014년에도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합계 81억 9,414만 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 C 계열사가 2015년 110억 5,069만 원 상당의 거래를, 2016년 129억 9,370만 원 상당의 거래를 하여 거래 규모가 상승하였으나,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 안정화에 따른 전반적인 이용확대 추세 및 C 계열사의 영업 필요성 증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골프장 전체 매출에서 C 계열사의 이용 거래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D이 법적인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게 된 전후에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4]

6) D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D은 이 사건 골프장 등의 운영을 맡게 된 2015년, 2016년 영업손실이 크게 증가하였는바, D으로서는 이 사건 골프장 등의 운영을 맡아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D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는 2014년 6,150억 9,300만 원, 2015년 5,955억 2,400만 원, 2016년 6,339억 4,142만 원[5] 가량으로 변화하였는바, 이 사건 골프장 등의 운영을 맡게 된 2015년의 지분가치가 그 전해보다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1,000,000원)

연도	자산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757,621	614,491	3,884	7,378	586	△2,774

3) T-Point란 E과 피고인 B의 우량고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서비스로, 금융거래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포인트를 우량고객에게 적립하여 주고 우량고객은 해당 포인트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제도이다. T-Point의 국내 제휴처는 이 사건 골프장과 호텔로 한정되어 있다. 우량고객이 이 사건 골프장과 호텔 이용 시 T-Point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10%가 T-Point로 적립되는데 이는 이 사건 골프장과 호텔이 부담한다.

4) 이 사건 골프장 전체 매출에서 C 계열사의 이용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도(2013. 5.부터) 67.6%, 2014년도 68.4%, 2015년도 72.3%, 2016년도 71.6%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자본총계 690,131,000,000원 / 주식수 776,787) ×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수 713,542주 = 633,941,420,237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7

2014	841,829	669,612	3,884	17,640	△210	1,996
2015	880,016	648,309	3,884	51,953	△11,991	2,350
2016	965,695	690,131	3,884	106,427	△11,846	△30,858

나. 원심이 고의를 부인하여 무죄를 선고함에 있어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판단 유탈을 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결국 고의를 부인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여러 구성요건 중 일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며 나머지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진숙 _____

판사 차승환 _____

판사 최해일 _____